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5458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5. 12. 15.

판결 선고 2016. 1. 12.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50631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H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H은 A 및 피고 B와 연대하여 45,87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2016.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H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A와 연대하여 45,879,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H은 A 및 피고 B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결혼 등

(1) 피고 C은 2008. 4. 1. 다세대주택인 인천 부평구 I 2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 C의 오빠인 J은 2009. 8.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아래의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공모,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16.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2011. 1. 12. 전유부분 면적 60㎡(24평형)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101동 1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2011. 2. 2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1. 3. 6. 피고 B와 결혼하였고, 피고 C, B 부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전세자금 편취

(1)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써,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도록되어 있다.

(2)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초로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아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1.

3. 3. 임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3.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H은 2011. 3. 16.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즉 '본 확인서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고 2011. 3. 18. A와 사이에 보증원금 4,770만 원, 보증기한 2013. 3. 18.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A는 이를 담보로 2011. 3. 18.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은 같은 날 피고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 H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B는 그 중 수수료조의 3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형사처벌 등

(1)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48,897,073원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3. 신한은행에 A로부터 회수한 3,017,250원을 공제한 45,879,8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B는 2014. 10. 16.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편취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나 1, 2호증의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

피고 B는 위와 같이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주택신용보증을 하여 그 보증금을 지출토록 하는 손해를 가하고 협조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피고 C의 경우에도 종전에 오빠인 J이 피고 C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피고 C, B 부부가 24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 C이 신한은행에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C도 위 편취의도를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원고 내지 신한은행의 부주의 등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79,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2.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5. 21.까지(피고B) 또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피고 C)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 부분은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문홍주, 판사 임창현